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05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이인영 · 이훈기 · 민병덕
김용만 · 강준현 · 이강일
박상혁 · 이기현 · 소병훈
이정문 · 복기왕 · 김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

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이 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당시의 임원을 포함한다.

마.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을 포함한다.

제3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자는 금융소비자와 중개한 계약에

다른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생략)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2.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 설></u>	<u>라. 이 법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 당시의 임원을 포함한다.</u>
<u><신 설></u>	<u>마.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u>

⑤ · ⑥ (생략)

<신설>

자의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임원을 포함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자는 금융소비자와 중개한 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되는 범위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본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

려야 한다.